#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72 발의연월일: 2020. 12. 21.

발 의 자: 박완주·김민철·이성만

박영순 · 양정숙 · 이해식

박성준 • 윤미향 • 변재일

남인순 · 최혜영 · 임호선

이정문 · 최종윤 · 고용진

이재정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 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 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 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 3원"을 "1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
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2
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	3
시(kWh)당 <u>0. 3원</u>	<u>1</u> 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